의 안 번 호	제48호
의결 연월일	2018. 7. 26.

# -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7월 12일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: 2018년 7월 12일

다. 상 정 일 자: 2018년 7월 26일,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희망마을건설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의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, 「농어촌정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 근거법률인 「농어촌정비법」의 인용 조를 '제9조'에서 '제10조'로 변경함(안 제1조)
- 현행 '농지개량 사업'과 '구획정리사업'을 각각 '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'과, '경지정리사업'으로 명칭을 변경함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10조)
-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의 게시 장소를 '사무소'에서 '읍·면·동'으로 명확히 함(안 제4조제4항)
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5. 토론요지 : 생 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